

⑨ 잔재물 발생내용				⑩ 잔재물 처리내용				
㉠ 구분	㉡ 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㉢ 발생량 (톤)	㉣ 성질·상태	㉤ 처리자 구분	㉥ 처리방법	㉦ 처리량 (톤)	㉧ 보관량 (톤)	㉨ 처리자 (장소)명
총 계								

작성방법

- ⑧란의 ㉠란 및 ⑨란의 ㉡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- ⑧란의 ㉡란 및 ⑨란의 ㉢란은 폐기물의 성질·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.
[1] 고상, [2] 액상
- ⑨란은 ㉠란은 수탁(잔재)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.
- ⑩란의 ㉤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"자가"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"위탁"으로 적습니다.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. (예: 위탁[2])
[1] 폐기물처리 신고자, [2] 중간처분업자, [3] 최종처분업자, [4] 중간재활용업자, [5] 최종재활용업자, [6] 종합재활용업자, [7] 해양배출업자, [8]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, [9] 공공처리(국가)시설, [10] 기타
- ⑩란의 ㉥란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- ⑨란 및 ⑩란에서 "잔재물"이란 중간처분량 중 소각 등 중간처분 공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고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